

3. 主要 政策 解說 (97. 9. 20 ~ 10. 20)

○ 정부, 98년도 예산안 확정(9.26)

-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8% 증가한 75조 5,603억원으로 편성되어 84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증가율을 기록함. 이는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아 세입내 세출이라는 원칙아래 최대한 긴축으로 전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됨
- 교육 및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경유와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인상하고, 교육세도 10% 인상함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방안」 발표(9.28)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민자 참여가 허용됨. 민간 기업이 택지조성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조성된 택지를 지급하고 개발권도 부여함
- 민자 참여 허용대상 택지 지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허용

○ 건설교통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0.1)

- 내년부터 수도권내 공장 증설이 허용되고 9만평 이하 규모의 관광지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자체의 사업 승인만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
- 종업원 후생 복지 시설과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R&D 시설 등은 공장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각종 영향 평가제도 통합작업 방안」 마련(10.11)

-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 평가제도의 중복실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7월까지 다양한 평가제도의 절차를 통합함
- 2000년 이후 개별적인 영향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일원화함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16)

- 통신 업체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취지하에 개정안이 입안됨
- 전국 전화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한 틀 마련.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춤

○ 재정경제원,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10.17)

- 기업들의 외화 접근을 대폭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관리 규정이 개정됨
-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 폐지, 외화 대출채권의 해외 매매 자유화,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자금의 사용 용도 자유화, 증권·투신 투자 관련 환전 허용, 은행업을 포함해 업종 제한 없이 기업이 해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